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69호 2026. 2. 26.(목)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937호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1938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939호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1940호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10

제1941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13

제1942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 16

제1943호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1944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제1945호 공주시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제1946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 34

제1947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제1948호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4

제1949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49

제1950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1951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1952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1953호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 72

제1954호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규 칙】

제69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2

【훈 령】

제34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153

【공 고】

제2026-524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주대학교)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 사업 완료 공고 192

제2026-5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주대학교) 공용건축물 용도변경(게스트하우스) 사업 완료 공고 195

제2026-601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99

제2026-602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230

【고 시】

제2026-36호 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이용료 결정 고시 238

제2026-38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프린세스G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이후 기존 “책공방 북아트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소아”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 경증 환자의 야간·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의 진료·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홍보)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진료기관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2.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942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서 사람에게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2. “방문 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사.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신청방법)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연 6회 이하로 한다.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방역 비용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등) ① 시장은 방문 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 ○ 보건(지)소

접수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문 방역자
					예정일	완료일	
예시 26-0 01							
26-0 02							

주) 접수번호는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내 접수번호 임.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 단위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내 접수번호 또는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2.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943호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 중 “정보를 「경찰법」 제2조”를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경찰청 및 관할”을 “시·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치유 프로그램 개발
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
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
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
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
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

4.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의례의 계승·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

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

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

4. 향교등의 환경정비

5. 향교·서원의 유형·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서원·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흡입독성”이란 화학물질이나 소독제품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나.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흡입독성의 위험이 적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대 및 지원 방안
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
4.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성분, 사용 실태, 흡입독성 위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흡입독성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올바른 소독 방법 및 환기 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방역업체 종사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흡입독성의 위험성, 환기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등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이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방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인들의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농인들의 가족을 포함한다) 및 보급
2.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영상물 제작·보급
3.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4.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
5.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공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 등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들이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수어통역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스마트 안전관리"란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 및 공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관내 민간 건설공사(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공사

2. 그 밖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기울기 위험 경보 장비, 근로자 위치관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
2.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3.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무선통신망 사용료
4. 그 밖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주시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보급·활성화 방안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 포함)
2. 소요 비용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정산, 반환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발주자에게 착공을 통보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2.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949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인공지능"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업무 수행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소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그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알고리즘"이란 컴퓨팅 장치 등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일련의 논리적 절차 또는 규칙을 말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공주시의 역사·문화적 특성,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산업 여건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의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2.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
3.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6.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7.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8.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조에 따른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

3.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혁신성장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컨설팅 등 보육 지원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관내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

제8조(지역산업 융합 촉진)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인공지능 해설사 등 실감형 콘텐츠 개발 지원
2. (농축산업) 스마트팜·스마트축사의 구축·운영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 지원

제9조(상용화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데이터를 실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용역 계약 시, 제1항에 따른 실증을 거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검증·인증을 받은 인공지능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①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도입·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의 학습 및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알 권리 보장)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다는 사실
2. 결정의 주요 기준 또는 원리
3.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제12조(시민 역량 강화)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체계의 재검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②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업무”를 “가족지원업무”로 한다.

④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

⑧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⑩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⑪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⑫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⑮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⑯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⑰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⑱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⑲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인구정책과장”을 “청년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인구정책과장”을 “청년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2]

국장별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자치안전 국 장	1 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지방분권, 주민자치, 기타 사회단체 관리, 북한이탈주민,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 관리, 자연재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항
	6 5도2촌(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도심활성화(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및 기반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분석·활용, 스마트도시,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8 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9 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 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1 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3 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시책 발굴,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경제문화 국 장	1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 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4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6	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백제문화촌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재단,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 학술·지표조사, 무형유산, 천연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환경성 건강센터, 치유의 숲, 금학생태공원, 한옥마을 등 공공 휴양·관광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정원조성(국가정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교육복지 국 장	1	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기타 교육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신관공원 관리, 쌍신공원 축구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국궁장 등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인구늘리기, 저출산 대응, 외국인 유입(이민), 다문화 가정,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고향사랑 기부금, 온누리 공주 시민제도 등에 관한 사항
	7	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재해구호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건설도시 국 장	1	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빈집 정비, 농촌 주거환경 정비 포함), 재개발·재건축, 도심 정비, 불법개발행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주거복지,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5	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교량) 설치 유지(안전점검 포함)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등에 관한 사항
	9	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보건소장 분장사무(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4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4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5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49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01	-				
3급	1	1				
4급	7(1)	4	1	2(1)		
5급	54	31	2	5	-	16
6급 이하 계	1,039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					
연구사	10	9		1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전문경력관 계	2	-				
나군	2	-				

※ 괄호()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입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려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의2에서**”를 “**법 제92조의2제1항**

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2.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952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 할”을 “해제할”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 할”을 “선임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분쟁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출석요구 통지서”를 “출석요구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임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년 으로 하되, 한”을 “2년으로 하되, 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택관리업무 팀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사요청 동의서”를 “감사 요청 동의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2항”을 “법 제93조제4항”으로, “없더라도”를 “없더라도”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8조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한다.

제42조 중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조 중 “(수당 등) 시”를 “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준공 연수	준공 후 25년 이상	20점	정량평가 (70점)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16점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13점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9점		
	준공 후 10년 미만	5점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5% 이상 100% 미만	16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60% 이상 75% 미만	13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45% 이상 60% 미만	9점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45% 미만	5점		
③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④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상태,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정성평가 (30점)
	효과성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편의성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필요성	선정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점 중 6점 하 2점	

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편의 등 제공)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③ 시장은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비 지원) 시장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내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나. 공주시 내 소재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알밤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센터 부지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가공시설을 제외한 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알밤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밤산업 육성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부지 내 기존 시설의 변경 및 추가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센터 업무 소관 국장, 센터 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된 사무 및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단체·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수탁기관의 주소(단체·법인의 소재지)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시설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8.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10.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과 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의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 관리 등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일반직 지방공업주사보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

[별표 1]

본청 분장사무 (제4조제1항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 감사 실	1	시정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종합 기획수립 및 각종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공약 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지시에 관한 사항
	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국회·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국비 확보 지원 업무 등)
	8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11	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15	의회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6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
	17	법 질서 확립 및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8	청문제도, 고문변호사 및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0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업무 포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기 감 사 획 실	21	감사행정 업무의 종합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2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체감사 및 징계, 소청 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4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직자 등의 청렴에 관한 사항
	26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 처리, 각종 감사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시 산하 직원(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청원산림호보직원 등) 비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28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29	시장 특명사항(지시사항을 포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0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기획, 예산, 의회법무규제, 청렴감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미 전 략 실	1	시 미래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점검 및 관리, 기타 협의회 구성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5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6	공모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7	광역 협력·제안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8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미 전 략 래 실	9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 직무성과평가 및 시·군 통합평가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유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2	미래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한 정부 주요 정책 대응 등에 관한 사항
	13	복합연수단지 총괄,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기관유치 및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분야 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인가는 도시정책과,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정책과와 도로과, 각종 인허가는 허가건축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
	14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15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책개발, 지역발전, 성장전략, 미래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투 유 치 자 실	1	투자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업인, 중소기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국내·외 투자, 우수기업유치 및 기업입지 조사 및 자료 제공 등)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활동(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MOU 체결 행사, 기업유치실무협의회 및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법규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7	물류기본계획 수립, 신규 물류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경영안정자금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투자유치	9	중소기업 제품 수출 및 통상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박람회 사업추진, 해외시장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1	기업 관련 산·관·학 관련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력업무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2	기업의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업인협의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의 제조업체 조사, 인력실태 조사, 기업(인)통계 등 기업 일반에 관한 사항
	15	창업 및 이전기업의 각종 행정절차 등 안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수급계획 수립 총괄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조성, 분양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 계획 및 관련 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0	개별공장의 기업입지 안내, 홍보 및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개별공장의 창업계획, 공장신설 승인(변경승인 포함), 소규모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인허가 완료까지 민원처리는 투자유치실에서 담당하고, 완료 이후 민원처리는 관련 부서에서 전담)
	2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노후시설 개보수 및 수질관리 전반 사항 포함)
	23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25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시책 발굴 및 계획수립, 향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섬유역사전시관 운영·관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등)	
27	그 밖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홍보 미디어실	1	직소민원(방문민원,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의 날 운영, 시장과의 대화 등 민원인과의 대화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민·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총괄에 관한 사항
	4	시 홍보매체의 통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정 홍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시민소통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장 말씀자료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항
	9	계통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주시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출입기자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보 및 시정지 발간에 관한 사항
	13	기록사진 촬영·편집·보존 및 시정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도자료 제공, 시정기록 수집,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해명 등에 관한 사항
	16	시정뉴스 및 시민의 방송 제작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8	전광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 홍보 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20	시 대표 축제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21	SNS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홍보 미디어실	22	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메타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챗봇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5	365 미디어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26	브랜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7	브랜드 활용 기념품 제작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28	마스코트 SNS 및 탈 인형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무지원에 관한 사항
	30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소통정책, 언론홍보, 뉴미디어, 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자 행 정 과	1
2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인감관계 업무 및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원 모임 운영, 각종 회의(실) 통제에 관한 사항
6		읍·면·동 행정 육성지도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구 등의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장 자체방호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11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에 관한 사항
12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13	행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방분권 이행 및 지방이양사무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5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이통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시 견학자에 대한 안내·홍보에 관한 사항
	18	문서의 생산·유통·보존·보안·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0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21	복무지도·감독 및 일·숙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직장 민방위대 및 직장 예비군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시장 및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처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에 관한 사항
	24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관한 사항
	25	시 역사에 관한 기록 유지(행정자료실), 기록물 유지관리의 계획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6	행정능률(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공무원 등 복지증진(연금, 보험)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 문화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29	주민자치아카데미, 주민자치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0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읍·면·동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3	민·관 협치 조례제정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34	민·관 협치 교육,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5	각종 사회단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효장학회, 3.1여성동지회 제외)
	36	새마을 운동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7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8	적십자 회비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39	인사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40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1	공무원 임면·징계·포상 및 보수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2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43	공무 국외연수(여행) 관리(허가 등)에 관한 사항
	44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세계역사도시연맹 포함)
	45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6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및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포상 및 징계, 교육 등 업무 전반)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사항(공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공무원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포함)
	48	그 밖에 시정, 서무, 인사, 새마을자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9	국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국, 소, 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및 재난 현장지휘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안 총 괄 전 과	5	자연·사회 재난 업무 총괄(지역방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관련 부서는 반드시 협조)
	6	생활안전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재해구호 총괄 조정)
	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방범용·어린이보호용·산성시장 CCTV 관제, 신설 및 유지관리) ※ 특수목적 CCTV의 설치·보수·유지관리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계 법령과 관련부서에서 유지·관리·점검 등을 담당)
	10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수, 안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12	재난분야 매뉴얼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특정관리대상 지역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정비 및 해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재해취약지구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기금), 급경사지 지정·관리)
	16	재난 유형별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9	자연재난 상황·대응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안전 총괄과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안전점검 등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공공시설은 건설과 유지·관리)
	2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 경보시스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원관리, 동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테러대비)에 관한 사항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사항
	31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에 관한 사항
	33	소방행정 등(소방 관련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34	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5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37	직장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안전정책, 자연재난대응, 상황관제, 민방위특사경,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지 활 역 과	1	5도2촌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사업과 관련한 중앙부처·충청남도 등의 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1사교 1촌 등)에 관한 사항
	5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인프라 구축, 홍보행사, (관광)체험패키지 구축, 프로그램 개발, 고객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농촌(마을)축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전략 및 활성화)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사업에 관한 사항
	13	일반근린·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원도심 내 활력거점 조성, 소규모 재생, 주민주도 공모,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
	17	마을 자생기반(마을공동체, 농업기업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8	지역공동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지 활 역 과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0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마을단위 추진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농촌정주기반사업은 제외)
	23	그 밖에 5도2촌, 왕도심활성화, 마을공동체, 농촌공간 업무에 관한 사항
스 마 트 정 보 과	1	정보화 및 기반조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종 통계(인구통계 포함)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 및 광역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추진
	7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시스템(챗봇,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무인항공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UAM 등) 육성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드론 특화도시 조성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능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정보자원관리(EA)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타부서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스 마 트 정 보 과	15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온나라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업무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 소통넷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22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2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
	26	국가정보통신망, LAN, IPT 운영·관리, 통신보안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28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및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9	회의실 영상, 음향 관리 및 회의영상 전송시스템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첨단항공정책, AI빅데이터, 스마트도시, 정보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회계과	1	국·도·시비 및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회계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의 구매·조달·수불·수선에 관한 사항
	9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발주 전 적정성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
	11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물조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4	공유재산(도·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대부,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 취득 및 처분 등)
	15	시 청사 보수유지 및 관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시 본청,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
	17	<p>공공건축물 건축 공사(건축 직류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시장 방침을 받은 10억원 이상의 신·증축 공사를 원칙으로 함)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 사전검토,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는 담당부서에서 시행 후 이관 - 회계과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완료 후 담당부서로 재이관
	18	그 밖에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세무과	1	지방세정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세무조사 등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6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 과징 관리에 관한 사항
	8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0	시 금고 지정·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2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표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세정, 시세, 징수, 세외수입, 과표 업무에 관한 사항
민원지과	1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포함)
	4	고질·탄원·다수·집단민원 등 각종 민원 총괄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1회 방문처리제(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주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민 토 지 원 과	7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 등 민원처리 주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새울 상담민원 포함)
	8	일반여권·창구민원, 언제 어디서나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9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거소이전에 관한 사항
	12	수형인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
	14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16	외국(법)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사항(토지)
	19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 안정화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업무에 관한 사항
	2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토지리 관련 일반삼각점(국토교통부 소관) 관리에 관한 사항
	24	등록번호 미등재 조사 등록에 관한 사항
	25	조상 땅 찾아주기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민 토 지 원 과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28	지적민원처리, 지적통계, 지적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
	32	「도로명주소법」에 관한 사항
	33	“공주시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민원정책, 통합민원,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주소,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경 제 과	1	지역경제 장기발전방안 계획 수립, 경제시책 구상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주요 경제산업 추진 동향 관리, 경제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형 유통업 등록 및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장 경영혁신, 육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동마케팅사업 등 시장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부정경쟁행위 지도, 상품 및 상거래 질서, 공산품 안전관리 등)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지표, 통계관리 등)
	9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마을기업 공모 지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육성에 관한 사항
	11	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경 제 과	13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14	대부업, 복권, 저축에 관한 사항
	15	방문 및 통신판매 신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및 은누리상품권 사용 홍보에 관한 사항
	17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0	승용차요일제, 탄소중립프로그램,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지원,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에너지 절약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가스사업자 관리 및 확대공급 추진, 공사계획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2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굴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
	23	전기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전기설비 관리(사업용 제외) 등)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사항
	26	「광업법」 및 광업권 협의에 관한 사항
	27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 지원 정책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9	일자리 창출 대책(일모아시스템 및 일자리 공시제 운영, 구인 구직 등)에 관한 사항
30	실업 해소 대책(공공근로, 공동체 및 맞춤형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정 정보망, 일자리 참여자 4대 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노동조합 관리 및 노사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경제과	32	근로자 복지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3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공주시일자리센터)에 관한 사항
	34	국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에너지지원, 일자리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문예화과	1	문화·예술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문화이용권 등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주문화관광재단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주문예회관, 아트센터고마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립예술단(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립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운영에 관한 총괄 사항(단체교섭, 단체협약, 감사, 복무 등 포함)
	7	예술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소외 지역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예술 관련 단체지원, 장르별 예술사업, 문화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한국예총공주지회 포함)
	9	종교 행정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10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감상실업, 공연장에 관한 사항
	11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에 관한 사항
	12	인쇄소 및 출판사에 관한 사항
	13	「저작권법」에 관한 사항(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개방·활용 등)
	14	공예품 개발 및 공예인 육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문 예 술 과	15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생활문화센터 조성(리모델링 포함)지원에 관한 사항(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예술분야에 한정)
	17	문화예술행사(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국제미술제, 전국향토연극제,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에 관한 사항
	18	도자문화 육성(도예촌활성화, 지역공예마을 육성, 철화분청산업화 방안, 도자문화축제 등)에 관한 사항
	19	공주시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작은 영화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주 하숙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문화예술 행사(추억의 포장마차 포함) 운영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3	문화·예술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포함)
	24	박찬호기념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시설운영, 문화시설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관 광 과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 주요시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금강권, 백제문화권 등 타 지역과의 관광사업 협력관계 유지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신고 및 안내센터(관광안내소) 운영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7	민·관 관광협력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단체와의 MOU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8	관광 입장객 통계관리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관 광 과	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이후 후속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10	관광진흥자금 융자 안내에 관한 사항
	11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용시설업,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12	공주문화관광지 조성(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관광지 지정·개발 및 관리, 관광시설물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비지정 관광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온천개발 및 온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16	종합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야영장(캠핑장) 관리, 관광특구 업무에 관한 사항
	1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국가의 주요 광역관광개발 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8	금강 옛 뱃길 복원, 음악분수 설치에 관한 사항
	19	각종 축제 추진, 축제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20	관광안내통역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관광모니터단 운영, 템플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
	21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관한 사항
	22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행사에 관한 사항
	23	사계절 축제(알밤축제 등)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계룡산산신제 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축제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6	중장기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7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28	신규 관광상품 개발, 테마관광코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시티투어, 팸투어, 수학여행단 유치 및 운영, 수학여행 관련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0	관광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관 광 과	31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강화에 관한 사항
	32	관광 SNS 운영 활성화, 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항
	33	관광 ICT 콘텐츠 구축사업, 통합관광 패스라인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관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백제문화촌 조성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관광정책, 관광개발, 축제, 백제문화촌 업무에 관한 사항
문 화 유 산 과	1	문화유산 보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향토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문화유산, 등록유산 등 지정·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적·유적지 및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7	충청문화유교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유형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에 관한 사항
	11	웅진백제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승덕전, 백제오감체험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박동진관소리전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마곡사) 등재 이후 후속 대책,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6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문 유 산 화 과	17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백제세계유산센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8	문화유산 야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
	20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등에 관한 사항
	21	국가 및 도지정유산,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 미래유산, 전통사찰 등 보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충·효·열 시설물 보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고도보존 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4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주민지원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포함)
	2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주민 협의회 등)
	26	공주목에 관한 사항
	27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8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구석기유적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포함)
	29	석장리박물관 시설 운영(유지보수 포함)에 관한 사항
	30	석장리유적지 고고학 연구 등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31	석장리박물관 소장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32	석장리박물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에 관한 사항
	33	석장리박물관 체험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4	사적·명승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 고도육성, 문화유산보수, 백제왕도, 사적지관리, 석장리박물관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휴양공원과	1	휴양지원 정책과 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등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성 건강센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한옥마을 민간위탁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공원정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조경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 가로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심지 도로변 화단 및 꽃길 가꾸기에 관한 사항(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내 녹지대 포함)
	13	도시 숲 조성, 녹색복지공간 조성, 담장 허물기, 녹색자금 지원수목원에 관한 사항
	14	국토공원화(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15	미르섬, 정안천생태공원, 계절별 꽃단지 등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16	숲길정비 및 숲길등산지도사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산림레포츠,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사항
	18	금강(어천-죽당지구)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휴양정책, 휴양운영, 공원녹지, 정원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환 보 호 경 과	1	환경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 포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허가 등의 내용 통보는 개별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수렵면허 발급·포획허가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생태통로 조성사업 포함)
	7	유해 야생동물 구제, 수렵장 운영(승인) 및 조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대응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요인의 조사·분석, 오염도 측정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피해지역 분쟁 조정, 규제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4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배출시설의 관리(검사·설치·허가·신고),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초)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문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환경오염 민원 해결 및 환경보전·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 사고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환경보호과	20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관리, 민간위탁 결정·운영, 설치 및 개보수 등)
	22	그 밖에 수질보전·개선에 관한 사항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공공시설 민간위탁 결정·운영·관리 등)
	24	그 밖에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환경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자순환과	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읍·면·동 포함) 가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토대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 현황 및 통계관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 설치 및 운영(민간위탁 결정·운영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8	매립장 내(장비, 시설, 침출수, 근로자 복무 등)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영농폐기물 수거 등)
	10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폐자원모으기 운동에 관한 사항(읍·면·동 숨은 자원 찾기)
	11	자원 재활용 처리시설(재활용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읍·면·동 포함)
	13	건축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생활·지정·의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자 순 환 원 과	15	(생활·지정·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처리업소 운영·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쓰레기봉투 판매·관리, 운영방식 결정, 판매자 선정 및 제작 등)
	17	「폐기물관리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8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교 체 육 과	1	교육 및 체육진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현안 건의사항 등 검토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지원(보조)에 관한 사항
	4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등 각종 장학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효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 관련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관내 대학과의 지역협력 사항 포함)
	7	공주교육지원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에 관한 사항
	9	글로벌대학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0	직장 체육팀 육성 및 시민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체육단체 및 경기가맹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교체육과	15	장애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	레포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골프장(파크골프장 포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수상 레저업 유치·등록, 수상레저 기구 등록,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3	쌍신생태체육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국궁장, 금강신관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25	국 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교육정책, 교육지원, 체육진흥, 체육시설조성, 체육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과	1	평생학습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행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성과체계 및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축제 추진, 네트워크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평 생 학 습 과	1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법」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교육청과의 협력사업 포함)
	1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유지보수, 물품관리, 세외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관리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자료실 관리·운영,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열람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작은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중앙부처,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활동평가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시설 지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 문화교류,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 수련 및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평생학습정책, 평생학습진흥, 웅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청년인구정책과	1	인구·청년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 저출산 대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대응 신규시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4	저출산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출산장려금, 전입지원금,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지역특화 비자사업 포함)
	8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정책수립·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운영지원 및 관리,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다문화어울림사업 등 다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6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온누리 공주 시민제도(온누리 공주 홈페이지, 가맹점, 마일리지 팸투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고향사랑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복지정책과	1	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운영·지원,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현충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동원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 시설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기가정 등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찾아가는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 총괄 전담인력 운용 포함)
	1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부랑인, 노숙인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1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생계,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수급권자 지원·선정 및 자격관리 등)

부서명	분장사무	
복지 정책 과	21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용(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복지분야)에 관한 사항
	23	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소득재산 변동관리에 관한 사항
	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에 관한 사항
	2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7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구호반 업무)
	28	그 밖에 복지정책, 행복키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관한 사항
경로 장애인 과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 고령화 대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노인회 지원, 시니어클럽 지원 및 관리,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4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등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시설(법인 포함) 설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사 등에 관한 사항
	10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11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자 지원, 기획, 자원관리 등)
	12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경로장애인과	13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발전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장애인 생활개선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법인관리, 거주시설·재활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장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경제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19	나래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민원처리, 운영위원회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나래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1	나래원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구호반, 공영장례비용 지원)
	24	그 밖에 경로복지, 경로시설,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나래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과	1	여성정책 계획 수립, 여성단체 지원관리, 여성회관 운영·관리 등 여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기금 운용·관리 등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여성사회교육,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폭력예방 교육 및 관리, 여성복지시설 인가 및 운영지원 등 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족지원 계획수립 등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가 지 원 족 과	8	한부모 가정 지원 등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1	복지아동 대상자 책정, 보육, 건강프로그램 운영, 복지지원기관 협약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2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설치, 사업운영지원,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결식아동급식 지원, 아동행사, 요보호아동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5	행복키움수당 사업 등 각종 아동수당사업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공원(지목)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
	17	보육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립어린이집 위탁, 평가인증제, 인가, 운영지침 교육 등 보육 관련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19	보육료 지원대상자 관리,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부모급여(영아수당) 및 각종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건 설 과	21
22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구호반 업무)
23		그 밖에 가족정책, 아동보호, 보육, 아동드림 업무에 관한 사항
1		건설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업 면허등록 및 변경신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육상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4		골재 선별·파쇄신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건 설 과	5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및 변경신고,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비법정 교량 및 도로 개설, 유지보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1	마을단위 지역개발 사업(아스콘덧씌우기 등)에 관한 사항
	12	마을회관(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 신설·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3	치수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14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지방 및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및 용도폐지,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16	위임관리하는 국·도유재산(하천·제방)의 관리·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7	하천골재 채취(준설토 계약 및 판매, 금강 하천골재 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
	18	금강 사업 및 유지·관리(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수문 정밀 점검 및 유지보수, 국가하천 점용·사용 및 홍수구역 관리, 금강신관공원 및 제민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농촌농업용수개발(양수장·관정, 배수장, 농업용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농촌 경지정리 및 관개시설(용배수 및 시설물 개선, 기계화경작로 확보장,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1	가뭄 피해대책(답작용에 한함)에 관한 사항
	22	한계농지 및 개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건설과	2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목적 외 사용승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25	국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계획, 하천시설, 농촌기반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과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변경·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시설 내 미 보상 편입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은 관리부서에서 개별 추진)
	6	장기미집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리부서에서 개별 추진)
	7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부서에서 개별 추진)
	8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리 포함)
	10	「경관법」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포함)
	1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포함)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포함)
1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관한 사항	
17	동원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개발,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허가 건축 과	1	건축, 농지, 산림, 개발행위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3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한 사항
	6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멸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사항(건축물 소유권 정리 등)
	10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다중밀집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관련 법규(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축 인·허가·신고(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분 포함), 협의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보관·변경·정정·말소 등)
	18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허 건 축 과	1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
	20	농지전용 허가(협의·변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등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농지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
	2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2	산지(일시)전용 허가·협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3	토석채취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간연장·분할납부·환급에 관한 사항
	25	개발행위 허가·협의·준공에 관한 사항(도시계획심의위원회 2분과 운영)
	26	그 밖에 건축행정, 주택관리, 건축1, 건축2, 농지산림, 개발행위 업무에 관한 사항
교 통 과	1	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용 자동차 관련 인·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수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등)
	6	항공에 관한 사항 (레저시설 사업 및 이착륙장 조성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
	7	도로변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가경보등 등) 설치 및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공공·부설 주차장(읍·면·동 청사 부설 주차장은 포함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제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정차(불법차량 포함) 지도·단속, 견인 및 부과징수행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교 통 과	12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용 차량(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교통사고 예방(거리질서 확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관리·이전에 관한 사항
	16	여객자동차 터미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건설기계 검사기간 경과 안내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및 재봉인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관리사업체(검사, 정비, 매매, 폐차)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건설기계 사업체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24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25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신설 추진에 관한 사항(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업무 포함)
	26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에 관한 사항
	27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구축에 관한 사항
	28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총괄
	29	공주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테마역 조성, 새빛세미나실 관리, 공주역 전시 및 홍보활동 등)
	30	인근 KTX 역 신설 대응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안전, 차량등록, 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1	도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시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의 관리·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타기관 사업시행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포함)
	4	가로 지장물, 불법적치물(노점상), 과적차량 단속 등 도로환경 불량 정비에 관한 사항
	5	공주시 도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로 노선 지정 업무 협의)
	6	제2금강교 및 공주IC 연결도로 개설 추진에 관한 사항
	7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9	도로부지 점용 인·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도로과	10	법정 시설물(도로, 교량, 터널, 육교) 긴급복구계획 수립, 정밀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에 한함)
	12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로 굴착, 도로변 환경정비 등 기타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 방재 및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교통사고 처리, 영조물 배상 및 국가배상업무 포함)
	16	도로보수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의 급여지급, 복지 등에 관한 사항(단,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1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공 자전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이전, 폐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19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 유지·보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 가로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산림자원과	1	산림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묘목생산기반조성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임업진흥지역 지정·해제·지정변경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및 산림교육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에 관한 사항
	8	숲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일반 산림정책(산림 및 임업통계,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목재생산업 등록 및 지원사업 등 목재이용법에 관한 사항
	11	산림보호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산지구분에 관한 사항
	13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4	「산지관리법」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허가과에 분장된 사무는 제외)
	15	산지전용(일시사용) 변경 허가·협의·신고, 기간연장, 복구설계·준공, 용도변경 등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채석단지 지정,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17	토석채취 변경 허가·신고, 기간연장, 복구설계·준공 등에 관한 사항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벌채,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산림자원과	20	임도 및 사방시설에 관한 사항
	21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22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관한 사항
	23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5	산림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6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
	29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생산·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30	공주밤 종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1	공주밤 연구소 실험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공주알밤특구 지정·운영, 공주밤 융복합사업(6차 산업화), 산·학·연 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1
2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계량기 관리(점검·교체·단속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상 수 도 과	4	상·하수도 검침원 등 공무원 관리(급여지급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 공급 전반(급수구역 확장, 급수체계 변경에 관한 계획, 시설공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면단위 지방상수도 추진계획, 용역·공사 등)
	9	취정수장, 배수지 운영 및 경비(시스템 운영·관리, 청소 및 소독 등)에 관한 사항
	10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법」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 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증설, 하수관거 정비·개량, 관리대행 운영 등)
	13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 보상, 하수도 준설·복구 등)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보존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개발, 지하수 폐공 및 사후관리 공사, 수도시설 수질관리, 지하수 수질 실태조사 등)
	16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먹는 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8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9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정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2]

직속기관 분장사무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 정 책 업 과	1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 발전대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 업무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농정심의회 등 농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업 관련 중앙부처·충청남도의 계획·사업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8 농업기술센터 내 예산·세외수입·물품관리·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지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불법 원상복구 등)
	11 농지전용 협의·변경, 농지전용 신고지의 용도변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발 및 사업실적확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촌유학 지원, 농촌민박 관리, 관광농원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농업 및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8 식량작물 증산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9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농 정 책 업 과	20	정부 양곡 보관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1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22	농자재 지원사업(농기계 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3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4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
	25	원예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채소, 과수, 화훼, 잠업, 인삼 등 특작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농업정책, 농촌복지, 농업지원,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업기술센터 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농 유 통 품 과	1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및 산지유통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수출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인증기준 설정·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마케팅 포함) 등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장터 운영(판매·홍보 등) 및 관리(입점자, 제품, 유통, 고객 등)에 관한 사항
	9	알밤한우 유통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알밤한우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농 유 품 통 과	11	알밤한우 공동상표 운영(개발)에 관한 사항
	12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13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먹거리 종합계획)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공공)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9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및 통합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20	로컬푸드 자체인증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로컬푸드 생산자 육성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22	로컬푸드 유통 혁신 인력 육성에 관한사항
	23	학교(공공)급식 기획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학교(공공)급식 관계시장 개척 및 관로 다변화에 관한 사항
	25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자 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6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GAP 포함)
	27	그 밖에 유통정책, 농축산유통, 먹거리지원, 생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 단체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알밤한우 유통, 홍보, 브랜드화 제외)
	4	축산단지 조성(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
	6	초지 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양봉산업 육성 및 곤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내수면 어업 및 수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축산정책 일반업무(가축통계 등)에 관한 사항
	10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11	가축방역 단체관리, 지역방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3	가축 방역시설 장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동물병원·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동물보호법」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처리 포함)
	16	조사료 생산·경영체 육성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17	축산 관련 중앙부처·충청남도의 계획·사업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8	축산농가 시범사업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의 자원화(액비, 공동자원)에 관한 사항
	20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 처리 및 악취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축산정책, 가축방역, 축산진흥, 동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농 진 홍 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 기반 구축 및 기능 다양화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인력 역량 개발 및 전문화에 관한 사항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촌인재 육성 지원(후계농업인 산업기능, 4-H, 청년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8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연구회 운영, 기초전문 기술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및 활동 지원
	10	농업인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농업회관, 영농재, 농업전시관)
	12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3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생활개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규모 농업인 농식품 가공시범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및 단체(개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8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19	도시농업(도시민의 개별단위) 체험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농 진 홍 촌 과	20	농촌체험 농가, 연구모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농업기술원)
	21	귀농·귀촌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2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3	귀농단체 육성 및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시민 농촌유치 등 귀농·귀촌 상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지도기획, 역량개발, 농촌자원, 귀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
	기 보 급 술 과	1
2		식량작물 우량종자(보급종, 신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기상재해대응 기술보급 및 기상관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 및 방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7		농작물 생산 환경 개선 및 적정시비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8		종합검정실 운영 및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0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활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1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2		채소 시범사업 추진 및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기 보 급 술 과	13	화훼 시범사업 추진 및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4	과수 시범사업 추진 및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5	특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6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 운영 및 실증 연구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8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19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
	20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1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실용화 교육에 관한 사항
	23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24	농업기계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남부·북부 상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식량작물, 환경농업, 소득작물, 농업기계 업무에 관한 사항
보 정 책 건 과	1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한 사항
	6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물품, 소모품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보 정 책 과	7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8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1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에 관한 사항
	13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
	14	「위생용품 관리법」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9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으뜸공주맛집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의료지원, 위생지도 업무)
	24	그 밖에 보건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위생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25	보건소 내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보건소 소관 업무 중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건 관 리 과	1	시민의 건강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비만, 절주, 신체활동)에 관한 사항
	3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민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6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7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11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3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기관 진료약품 구입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소모품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진단서 포함) 발급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
	18	진료 및 치료·검사에 관한 사항
	19	민원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관한 사항
	21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22	의료반 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건기관 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2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원격협진에 관한 사항
	25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6	방문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2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 관한 사항
	30	국가 암 관리에 관한 사항
	31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의료지원 업무)
	33	그 밖에 건강증진, 모자보건, 진료민원, 방문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	1
2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
8		치매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질 관 리 과 병 과	11	감염병 예방관리·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3	법정감염병(1-4급)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6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관련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8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격리시설 운영 관리 및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감염병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1	감염병 대응 물품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통계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3	감염병 대응인력 양성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4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
	25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7	국가결핵관리에 관한 사항
	28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9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항
	30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방역, 심리회복 업무)
31	그 밖에 정신건강, 치매예방, 치매지원, 감염병대응, 감염병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3]

읍·면·동 분장사무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읍·면	1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시책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3	중요 행사 및 의전 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사항
	4	동향 및 현안사항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단체 및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8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사무인계인수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1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12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정기분 고지서 송달,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수납, 100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
	13	공인교부 및 폐기, 공인대장 작성 등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도·정,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15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16	회계일반에 관한 사항(청사·물품·차량관리 포함)
	17	체육행사 개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협조,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읍·면	20	보건업무(방역소독 등)에 관한 사항
	21	꽃동네 새마을 가꾸기 등 국토공원화 업무에 관한 사항
	22	청소인력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접수, 복지대상자 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
	24	의료급여대상자 신청접수,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선택병의원제 포함)
	25	전세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접수, 국가 유공자 수당 신청 접수 등에 관한 사항
	26	복지할인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청 접수 등에 관한 사항
	27	이웃돕기 결연, 복지 상담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8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자 지원 등)
	29	장애인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등급 변경 신청접수,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대장관리,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등)
	30	한부모 가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청 접수, 시설 입소 의뢰 등)
	31	경로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경로당 현황 조사 및 관리 점검, 기초연금 신청 접수 및 관리 등)
	32	경로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매장신고, 묘지개장 신고)
	33	아동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위탁 아동(소년소녀가정 포함),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책정의뢰), 어린이 놀이터, 아동 바우처 신청접수 등)
	34	통합사례관리 실시에 관한 사항
	35	접수대상자 사례관리별 심층조사 및 선정
	36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에 관한 사항(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인력 운용 포함)
	37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8	민관협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9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자원발굴, 관리실무)
40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41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숨은 자원찾기 등)
	42	민원 24 및 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사항(접수, 제증명 발급, 발급수수료 정산 등)
	43	민원사무처리부에 관한 사항
	44	수입증지 일일 결산에 관한 사항
	45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발급대장 관리 등)
	46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7	인감 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발급, 이송, 관리, 등록 및 변경 신고, 발급대장 등)
	48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발급, 대장관리, 과태료 징수, 주민등록 증 수불 및 관리대, 일일·월간 처리내역 등)
	49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출생 및 사망 신고, 과태료 징수, 신고사항 접수처리부 등)
	50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취학예정자 조사, 취학아동 명부작성, 명부 열람, 통지서 배부 등)
	51	신원조회 및 수형인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읍·면	52	사실조사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사항
	53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완납 증명)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4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감독 포함)
	55	수방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6	옥외광고물 신고 등 처리에 관한 사항
	57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산불예방 감시원 운용 등)
	58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이륜차 등록 및 변경, 버스승강장 관리, 가로등 및 방법 등 관리)
	59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농지원부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임대차 신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불법행위 단속 등)
	60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농업재해 대책, 추곡수매,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인자녀학 자금 지원, 벼 보급종 및 각종 종자 신청, 농업 기계화 사업 등)
	61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가축 통계·실태조사, 가축방역 등)

구 분	분 장 사 무	
동	1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시책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3	중요 행사 및 의전 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사항
	4	동향 및 현안사항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단체 및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8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사무인계인수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1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12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정기분 고지서 송달,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 수납, 100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
	13	공인교부 및 폐기, 공인대장 작성 등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도·정,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15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16	회계일반에 관한 사항(청사·물품·차량관리 포함)
	17	체육행사 개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협조,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0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21	꽃동네 새마을 가꾸기 등 국토공원화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동	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접수, 복지대상자 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
	23	의료급여대상자 신청접수, 의료급여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병의원제 포함)
	24	전세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접수, 국가 유공자 수당 신청 접수 등에 관한 사항
	25	이웃돕기 결연, 복지 상담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6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자 지원 등)
	27	장애인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등급 변경 신청접수,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대장관리,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등)
	28	한부모 가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청 접수, 시설입소 의뢰 등)
	29	경로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경로당 현황 조사 및 관리 점검, 노인시설 입소의뢰, 기초연금 신청 접수 및 관리 등)
	30	아동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위탁 아동(소년소녀가정 포함),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책정의뢰), 아동 바우처 신청접수 등)
	31	통합사례관리 실시에 관한 사항
	32	접수대상자 사례관리별 심층조사 및 선정
	33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에 관한 사항(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인력 운용 포함)
	34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5	민관협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자원발굴, 관리실무)
	37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숨은 자원찾기 등)	

구 분	분 장 사 무	
동	39	민원 24 및 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사항(접수, 제증명 발급, 발급 수수료 정산 등)
	40	민원사무처리부에 관한 사항
	41	수입증지 일일 결산에 관한 사항
	42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발급대장 관리 등)
	43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4	인감 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발급, 이송, 관리, 등록 및 변경 신고, 발급대장 등)
	45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발급, 대장관리, 과태료 징수, 주민등록 증 수불 및 관리대, 일일·월간 처리내역 등)
	46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취학예정자 조사, 취학아동 명부작성, 명부 열람, 통지서 배부 등)
	47	사실조사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사항
	48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완납 증명)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9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0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산불예방 감시원 운용 등)
	51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버스승강장 관리,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5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농지원부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경증명서 발급, 농지임대차 신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53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농업재해 대책, 추곡수매,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벼 보급종 및 각종 종자 신청, 농업 기계화 사업 등)	
54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가축 통계·실태조사, 가축방역 등)	

[별표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54조 제1항 관련)

(단위: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1149	667	26	184	272	21	154	9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01	654	26	149	272	21	154	97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5	4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4	31	2	5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5	5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9	9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지방공업·환경·시설사무관								
지방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9		1		8	1	4	3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2				2			2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사무관	3	3						
지방행정·공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시설사무관	4	3	1					
지방행정·농업·녹지·환경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2			2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6급 소계	296	187	7	37	65	5	36	24
지방행정주사	48	41	4		3	1		2
지방세무주사	3	3						
지방사회복지주사	6	5			1			1
지방공업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수의주사	1			1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5			5				
지방환경주사	2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시설주사	15	15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운전주사	6	5		1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14	11			3		1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29	11	1		17	2	9	6
지방행정·전산주사	5	5						
지방행정·사서주사	6	6						
지방행정·공업주사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	8			6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4	2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3	3						
지방행정·시설주사	36	28			8		4	4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	1	1						
지방위생·사무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2				2			2
지방행정·세무·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세무·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3	3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공업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주사	6				6		3	3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주사	2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5	5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7	7						
지방행정·공업·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운전주사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주사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주사	7	5			2	1	1	
지방행정 · 농업주사 · 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 · 녹지 · 시설주사	3	3						
지방행정 · 보건 · 간호주사	2			2				
지방행정 · 보건 · 운전주사								
지방행정 · 환경 · 시설주사	2	2						
지방행정 · 시설 · 방재안전주사	1	1						
지방행정 · 시설주사 · 농촌지도사								
지방행정 · 위생 · 사무운영주사								
지방사회복지 · 보건 · 간호주사	2	1		1				
지방농업 · 녹지 · 시설주사								
지방농업 · 수의 ·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보건 · 의료기술 · 간호주사	6			6				
지방보건 · 간호 · 보건진료주사	1			1				
지방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농업주사	6				6	1	3	2
지방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시설주사	3	1			2		2	
지방행정 · 세무 · 농업 · 시설주사	4				4		3	1
지방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주사	2				2		2	
지방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간호주사	1	1						
지방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주사	2				2		2	
지방행정 · 농업 · 녹지 ·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 농업 · 수의 · 환경주사	1	1						
지방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주사	5	1		4				
7급 소계	342	216	11	42	73	5	40	28
지방행정주사보	54	42	7		5	1		4
지방세무주사보	9	9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8	6			12		7	5
지방사서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5	4		1				
지방농업주사보	2			2				
지방녹지주사보	2	2						
지방수의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진료주사보	10			10				
지방환경주사보	2	2						
지방시설주사보	22	2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운전주사보	14	11		1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0	4			6	1	4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7	7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35	10	1		24	2	9	13
지방행정·사서주사보	7	7						
지방행정·속기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9	9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9	2		3	14		11	3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주사보	35	27	1		7	1	4	2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전산·농업주사보	1			1				
지방전산·시설주사보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사회복지·시설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수의주사보	4			4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2	2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보	2	2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보	4	4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주사보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 · 공업 · 농업주사보	1			1				
지방행정 · 공업 · 방송통신주사보								
지방행정 · 공업 · 환경주사보	1	1						
지방행정 · 공업 · 시설주사보	9	8		1				
지방행정 · 공업 · 위생주사보	1	1						
지방행정 · 농업 · 녹지주사보	3	2			1		1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주사보	2	2						
지방행정 · 녹지 · 시설주사보	2	2						
지방행정 · 해양수산 · 시설주사보								
지방행정 · 보건 · 간호주사보	9	2		7				
지방사회복지 · 보건 · 간호주사보	9	8		1				
지방공업 · 위생 · 사무운영주사보								
지방농업 · 수의 · 방재안전주사보	1			1				
지방보건 · 의료기술 · 간호주사보								
지방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주사보	2	2						
8급 소계	270	149	4	46	71	5	44	22
지방행정서기	32	26	2		4		1	3
지방세무서기	6	6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8	4			4		3	1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3	2		1				
지방농업서기	3			3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2			2				
지방간호서기	18			2	16	1	9	6
지방보건진료서기	4			4				
지방환경서기	1	1						
지방시설서기	10	10						
지방위생서기								
지방운전서기	12	5	2		5	1	4	
지방기계운영서기	2	1		1				
지방행정 · 세무서기	12	4			8	1	3	4
지방행정 · 전산서기	2	2						
지방행정 · 사회복지서기	23	11			12		9	3
지방행정 · 사서서기	4	4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 · 속기서기								
지방행정 · 공업서기	6	6						
지방행정 · 농업서기	15	3		4	8	2	4	2
지방행정 · 녹지서기	3	2			1		1	
지방행정 · 보건서기	3	1			2		2	
지방행정 · 간호서기								
지방행정 · 환경서기	4	4						
지방행정 · 시설서기	31	24			7		7	
지방행정 · 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 · 보건서기								
지방사서 · 공업서기	1	1						
지방공업 · 농업서기								
지방공업 · 환경서기	1	1						
지방보건 · 의료기술서기	4			4				
지방보건 · 간호서기	4			4				
지방의료기술 · 간호서기	2			2				
지방환경 · 시설서기	2	2						
지방위생 · 기계운영서기								
지방위생 · 사무운영서기	1	1						
지방행정 · 세무 · 사회복지서기	1				1			1
지방행정 · 세무 · 공업서기	1	1						
지방행정 · 전산 · 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 · 사회복지 · 간호서기								
지방행정 · 공업 · 농업서기								
지방행정 · 공업 ·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 공업 · 시설서기	6	6						
지방행정 · 공업 · 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 · 공업 · 위생서기	1	1						
지방행정 · 농업 ·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서기	3			1	2			2
지방행정 · 농업서기 · 농촌지도사								
지방행정 · 녹지 · 시설서기	4	3			1		1	
지방행정 · 해양수산 · 시설서기								
지방행정 · 보건 · 간호서기	4			4				
지방행정 · 보건 ·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 환경 · 시설서기	1	1						
지방행정 · 시설 · 방재안전서기	5	5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서기	1			1				
지방보건 · 의료기술 · 간호서기	5			5				
지방보건 · 간호 · 보건진료서기								
지방보건 · 간호 · 시설서기								
지방행정 · 농업 · 식품위생 · 시설서기	1	1						
지방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서기	4			4				
지방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서기	1			1				
9급 소계	131	66	1	17	47	5	25	17
지방행정서기보	8	3			5	1	1	3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3			1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보	3			3				
지방녹지서기보	2	2						
지방보건서기보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4	4						
지방위생서기보								
지방운전서기보	4	2		1	1		1	
지방행정 · 세무서기보	4				4		4	
지방행정 · 전산서기보	2	2						
지방행정 · 사회복지서기보	27	3			24	2	11	11
지방행정 · 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 · 공업서기보	2	2						
지방행정 · 농업서기보	6			3	3		1	2
지방행정 · 녹지서기보	2	2						
지방행정 · 보건서기보	3	1		1	1		1	
지방행정 · 환경서기보	4	4						
지방행정 · 시설서기보	23	15			8	1	6	1
지방전산 · 방송통신서기보								
지방사회복지 · 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 · 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 · 공업서기보								
지방공업 · 농업서기보	1			1				
지방공업 · 환경서기보								
지방공업 · 시설서기보	2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공업·운전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6			6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2	2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4	4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3	3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2	2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서기보	1	1						
연구직 계	10	9		1				
지방학예연구사	5	5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2	1		1				
지방학예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2			2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시설사무관								
지도사 소계	30			30				
지방농촌지도사	20			20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2			2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3			3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4			4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전문경력관 계	2	1		1				
나군	2	1		1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일반직 지방공업주사보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공주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실				시민자치국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계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투자유치실	홍보미디어실	소계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지역활력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토지과	소계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소계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과	청년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소계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자원과	상하수도과	
총계	667	74	28	14	12	20	15	24	22	15	16	23	27	32	13	16	16	19	25	19	18	22	13	25	27	12	27	23	18	16	24	17	32	23	24	22	25	
정무직 계	1	1			1																																	
시장	1	1			1																																	
일반직 계	654	72	28	14	12	17	15	22	22	15	16	23	27	32	12	16	16	19	19	19	18	22	13	25	27	12	27	23	18	16	24	17	32	23	24	21	24	
3급 소계	1	1	1																																			
지방부이사관	1	1	1																																			
4급 소계	4					1	1							1	1							1	1						1	1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1	1							1	1							1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5급 소계	31	4	1	1	1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6	1	1	1	1	1	1	7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5	2	1		1	3	1																															
지방시설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9	2		1	1	2		1				1	3		1	1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2													1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농촌지도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별표 3]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계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계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총계	184	85	21	14	17	15	18	99	53	22	24
정무직계											
시장											
일반직 계	149	50	17	11	16	2	4	99	53	22	24
3급 소계											
지방부이사관											
4급 소계	2	1	1					1	1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1								
5급 소계	5	2		1	1			3	1	1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서사무관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 ·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 ·녹지사무관												
지방행정·농업 ·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 ·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 사무관·농촌지 도관												
지방행정·녹지 ·시설사무관												
지방행정·보건 ·간호사무관												
지방행정·환경 ·시설사무관												
지방행정·시설 ·방송통신사무 관												
지방공업·환경 ·시설사무관												
지방농업·수의 사무관·농촌지 도관												
지방보건·의료 기술·간호사무 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시 설사무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간 호사무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환 경사무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사무 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보건·시 설사무관												
지방행정·사회 복지·보건·간 호사무관												
지방행정·공업 ·녹지·시설사 무관												
지방행정·공업 ·환경·시설사 무관												
지방행정·농업 ·녹지·환경사 무관												
지방행정·농업 ·녹지·시설사 무관												
지방행정·농업 ·보건·시설사 무관												
지방행정·농업 ·환경·시설사 무관												
지방행정·농업 ·시설사무관· 농촌지도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2	2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1
6급 소계	37	15	5	3	5	1	1	22	10	6	6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1				
지방농업주사	1	1	1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1	1			1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5							5	5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위생주사	1							1	1		
지방운전주사	1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전산주사											
지방행정·사서주사											
지방행정·공업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6	6	2	3	1						
지방행정·녹지주사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지방농업·수의 주사	1	1			1						
지방농업·해양 수산주사											
지방농업주사· 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시설·방재 안전주사											
지방위생·사무 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 ·농업주사											
지방행정·세무 ·보건주사											
지방행정·세무 ·환경주사											
지방행정·전산 ·시설주사											
지방행정·전산 ·방송통신주사											
지방행정·사회 복지·공업주사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주사											
지방행정·사회 복지·보건주사											
지방행정·사회 복지·시설주사											
지방행정·공업 ·환경주사											
지방행정·공업 ·보건주사											
지방행정·공업 ·시설주사											
지방행정·공업 ·방송통신주사											
지방행정·공업 ·운전주사											
지방행정·농업 ·녹지주사											
지방행정·농업 ·보건주사											
지방행정·농업 ·시설주사											
지방행정·농업 주사·농촌지도 사	1	1				1					
지방행정·녹지 ·시설주사											
지방행정·보건 ·간호주사	2						2		2		
지방행정·보건 ·운전주사											
지방행정·환경 ·시설주사											
지방행정·시설 ·방재안전주사											
지방행정·시설 주사·농촌지도 사											
지방행정·위생 ·사무운영주사											
지방사회복지· 보건·간호주사	1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농업·수의·해양수산주사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6							6	2	2	2
지방보건·간호·보건진료주사	1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주사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주사											
지방행정·세무·농업·시설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주사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행정·농업·수의·환경주사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4							4		1	3
7급 소계	42	15	4	3	6	1	1	27	16	5	6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서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	2	2	2								
지방녹지주사보											
지방수의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2							2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보건진료주사보	10							10	10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운전주사보	1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행정·세무주사보											
지방행정·전산주사보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지방행정·사서주사보											
지방행정·숙기주사보											
지방행정·공업주사보											
지방행정·농업주사보	3	3	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지방행정·시설주사보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농업주사보	1	1		1							
지방전산·시설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사회복지·시설주사보											
지방공업·환경주사보											
지방농업·수의주사보	4	4				4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1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1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보											

지방행정·전산 ·방송통신주사 보											
지방행정·사회 복지·농업주사 보											
지방행정·공업 ·농업주사보	1	1	1								
지방행정·공업 ·방송통신주사 보											
지방행정·공업 ·환경주사보											
지방행정·공업 ·시설주사보	1						1	1			
지방행정·공업 ·위생주사보											
지방행정·농업 ·녹지주사보											
지방행정·농업 ·시설주사보											
지방행정·녹지 ·시설주사보											
지방행정·해양 수산·시설주사 보											
지방행정·보건 ·간호주사보	7						7	2	1	4	
지방사회복지· 보건·간호주사 보	1						1			1	
지방공업·위생 ·사무운영주사 보											
지방농업·수의 ·방재안전주사 보	1	1			1						
지방보건·의료 기술·간호주사 보											
지방행정·보건 ·의료기술·간 호주사보											
8급 소계	46	10	5	2	2		1	36	20	8	8
지방행정서기											
지방세무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사회복지서 기											
지방사서서기											
지방공업서기	1	1					1				
지방농업서기	3	3	1	1	1						
지방녹지서기											
지방보건서기	2							2	1	1	
지방의료기술서 기	2							2	1	1	
지방간호서기	2							2	1	1	
지방보건진료서 기	4							4	4		
지방환경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위생서기											
지방운전서기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지방행정·전산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지방행정·사서서기											
지방행정·속기서기											
지방행정·공업서기											
지방행정·농업서기	4	4	2	1	1						
지방행정·녹지서기											
지방행정·보건서기											
지방행정·간호서기											
지방행정·환경서기											
지방행정·시설서기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지방사서·공업서기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4						4	3	1		
지방보건·간호서기	4						4	2	1	1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1	1		
지방환경·시설서기											
지방위생·기계운영서기											
지방위생·사무운영서기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지방행정·세무·공업서기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지방행정·공업·농업서기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											

지방행정·공업 ·시설서기											
지방행정·공업 ·방재안전서기											
지방행정·공업 ·위생서기											
지방행정·농업 ·환경서기											
지방행정·농업 ·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농업 서기·농촌지도 사											
지방행정·녹지 ·시설서기											
지방행정·해양 수산·시설서기											
지방행정·보건 ·간호서기	4						4	2		2	
지방행정·보건 ·환경서기	1						1			1	
지방행정·환경 ·시설서기											
지방행정·시설 ·방재안전서기											
지방보건·식품 위생·의료기술 서기	1						1	1			
지방보건·의료 기술·간호서기	5						5	1	1	3	
지방보건·간호 ·보건진료서기											
지방보건·간호 ·시설서기											
지방행정·농업 ·식품위생·시 설서기											
지방행정·보건 ·의료기술·간 호서기	4						4	2	1	1	
지방보건·식품 위생·의료기술 ·간호서기	1						1	1			
9급 소계	17	7	2	2	2		1	10	5	2	3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 기보											
지방사서서기보											
지방속기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보	3	3		1	2						
지방녹지서기보											
지방보건서기보											
지방환경서기보											
지방시설서기보											
지방위생서기보											
지방안전서기보	1							1			1
지방행정·세무 서기보											

지방행정·전산 서기보												
지방행정·사회 복지서기보												
지방행정·사서 서기보												
지방행정·공업 서기보												
지방행정·농업 서기보	3	3	2	1								
지방행정·녹지 서기보												
지방행정·보건 서기보	1						1	1				
지방행정·환경 서기보												
지방행정·시설 서기보												
지방전산·방송 통신서기보												
지방사회복지· 보건서기보												
지방사회복지· 시설서기보												
지방사서·공업 서기보												
지방공업·농업 서기보	1	1					1					
지방공업·환경 서기보												
지방공업·시설 서기보												
지방공업·운전 서기보												
지방보건·의료 기술서기보	6						6	2	2	2		
지방행정·전산 ·방송통신서기 보												
지방행정·공업 ·환경서기보												
지방행정·공업 ·시설서기보												
지방행정·농업 ·시설서기보												
지방행정·농업 ·방재안전서기 보												
지방행정·녹지 ·시설서기보												
지방행정·보건 ·의료기술서기 보	1						1	1				
지방보건·식품 위생·의료기술 서기보	1						1	1				
지방행정·전산 ·공업·방송통 신서기보												
연구직 계	1	1					1					
지방학예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												
지방농업연구· 녹지연구사	1	1					1					

지방학예연구사 · 행정주사보												
지방기록연구사 · 행정주사보												
지도직 계	33	33	4	3	1	13	12					
지도관 소계	3	3	1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 · 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 행정·농업사 무관	2	2	1			1						
지방농촌지도관 · 행정·농업· 시설사무관												
지도사 소계	30	30	3	3	1	12	11					
지방농촌지도사	20	20				10	10					
지방농촌지도사 · 행정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 · 농업주사	2	2		1	1							
지방농촌지도사 · 행정주사보	3	3	1			1	1					
지방농촌지도사 · 농업주사보	4	4	2	2								
별정직 계												
5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7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전문경력관 계	1	1					1					
나군	1	1					1					

[별표 4]

공주시 읍·면·동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읍		면										동						
		소계	유구읍	소계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흥면	소계	중학동	응진동	금학동	우룡동	신관동	월송동
총계	272	21	21	154	17	16	18	17	17	18	18	17	16	97	13	14	14	17	20	19
정무직계																				
시장																				
일반직 계	272	21	21	154	17	16	18	17	17	18	18	17	16	97	13	14	14	17	20	19
3급소계																				
지방부이사관																				
4급소계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농촌지도관																				
5급 소계	16	1	1	9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서사무관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지방행정· 방송통신사 무관																				
지방행정· 사회복지· 시설사무관																				
지방행정· 사서·시설 사무관																				
지방행정· 공업·시설 사무관																				
지방행정· 농업·수의 사무관																				
지방행정· 농업·녹지 사무관																				
지방행정· 농업·보건 사무관																				
지방행정· 농업·시설 사무관																				
지방행정· 농업사무관 ·농촌지도 관																				
지방행정· 녹지·시설 사무관																				
지방행정· 보건·간호 사무관																				
지방행정· 환경·시설 사무관																				
지방행정· 시설·방송 통신사무관																				
지방공업· 환경·시설 사무관																				
지방농업· 수의사무관 ·농촌지도 관																				
지방보건· 의료기술· 간호사무관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시설 사무관	8	1	1	4	1	1		1	1			3		1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간호 사무관	1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환경 사무관	1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사무관 ·농촌지도 관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위생주사																				
지방운전주사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주사	3			1		1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7	2	2	9	1	1	1	1	1	1	2		1	6	2	1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																				
지방행정·사서주사																				
지방행정·공업주사																				
지방행정·농업주사	2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	2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지방행정·환경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	8			4		1	1		1				1	4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지방농업·수의주사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																				
지방위생·사무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2													2				1	1	

지방행정·세무·보건 주사																				
지방행정·세무·환경 주사																				
지방행정·전산·시설 주사																				
지방행정·전산·방송 통신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공업 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 주사	6			3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 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 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 주사																				
지방행정·공업·보건 주사																				
지방행정·공업·시설 주사																				
지방행정·공업·방송 통신주사																				
지방행정·공업·운전 주사																				
지방행정·농업·녹지 주사																				
지방행정·농업·보건 주사																				
지방행정·농업·시설 주사	2	1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농촌지도사																				
지방행정·녹지·시설 주사																				
지방행정·보건·간호 주사																				
지방행정·보건·운전 주사																				
지방행정·환경·시설 주사																				
지방행정·시설·방재 안전주사																				

지방행정· 시설주사· 농촌지도사																				
지방행정· 위생·사무 운영주사																				
지방사회복 지·보건· 간호주사																				
지방농업· 녹지·시설 주사																				
지방농업· 수의·해양 수산주사																				
지방보건· 의료기술· 간호주사																				
지방보건· 간호·보건 진료주사																				
지방행정· 세무·사회 복지·농업 주사	6	1	1	3	1			1				1	2	1					1	
지방행정· 세무·사회 복지·시설 주사	2			2						1	1									
지방행정· 세무·농업 ·시설주사	4			3			1	1		1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보건 주사	1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시설 주사	2			2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보건·간호 주사																				
지방행정· 사회복지· 보건·시설 주사	2			2				1				1								
지방행정· 농업·녹지 ·시설주사																				
지방행정· 농업·수의 ·환경주사																				
지방행정· 보건·의료 기술·간호 주사																				
7급 소계	73	5	5	40	5	4	4	4	5	4	4	6	4	28	3	3	3	5	6	8
지방행정주 사보	5	1	1											4	1	1		1	1	
지방세무주 사보																				
지방전산주 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2			7	1	1	1		1	1	1		1	5	1	1		1	1	1	
지방사서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지방수의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운전주사보	2			2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행정·세무주사보	6	1	1	4	1			1	1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24	2	2	9	1	1	1	1	1	1	1	1	1	13	1	1	1	1	2	4	4
지방행정·사서주사보																					
지방행정·숙기주사보																					
지방행정·공업주사보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4			11	1	1	2	2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지방행정·환경주사보																					
지방행정·시설주사보	7	1	1	4		1			1			1	1	2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농업주사보																					
지방전산·시설주사보																					
지방전산·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지방공업·위생·사무운영주사보																				
지방농업·수의·방재안전주사보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8급 소계	71	5	5	44	4	4	6	5	5	6	6	4	4	22	3	3	3	4	5	4
지방행정서기	4			1									1	3		1			1	1
지방세무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4			3			1				1	1		1					1	
지방사서서기																				
지방공업서기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지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간호서기	16	1	1	9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보건진료서기																				
지방환경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위생서기																				
지방안전서기	5	1	1	4				1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지방행정·세무서기	8	1	1	3	1						1		1	4	1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9	1	1	1	1	1	1	1	1	1	3	1			2		
지방행정·사서서기																				

지방행정·속기서기																			
지방행정·공업서기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2	4		1	1		1	1			2		1	1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1	1									
지방행정·간호서기																			
지방행정·환경서기																			
지방행정·시설서기	7			7	1	1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지방사서·공업서기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지방보건·간호서기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지방환경·시설서기																			
지방위생·기계운영서기																			
지방위생·사무운영서기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1												1						1
지방행정·세무·공업서기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지방행정·공업·농업서기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																			

지방행정· 공업·방재 안전서기																				
지방행정· 공업·위생 서기																				
지방행정· 농업·환경 서기																				
지방행정· 농업·시설 서기	2											2						1	1	
지방행정· 농업서기· 농촌지도사																				
지방행정· 녹지·시설 서기	1			1				1												
지방행정· 해양수산· 시설서기																				
지방행정· 보건·간호 서기																				
지방행정· 보건·환경 서기																				
지방행정· 환경·시설 서기																				
지방행정· 시설·방재 안전서기																				
지방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서 기																				
지방보건· 의료기술· 간호서기																				
지방보건· 간호·보건 진료서기																				
지방보건· 간호·시설 서기																				
지방행정· 농업·식품 위생·시설 서기																				
지방행정· 보건·의료 기술·간호 서기																				
지방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간호서기																				
9급 소계	47	5	5	25	3	3	3	3	2	3	3	2	3	17	2	3	3	3	4	2
지방행정서 기보	5	1	1	1	1									3		2			1	
지방사회복 지서기보	1	1	1																	
지방사서서 기보																				

지방속기서 기보																				
지방공업서 기보																				
지방농업서 기보																				
지방녹지서 기보																				
지방보건서 기보																				
지방환경서 기보																				
지방시설서 기보																				
지방위생서 기보																				
지방운전서 기보	1			1			1													
지방행정· 세무서기보	4			4		1		1		1	1									
지방행정· 전산서기보																				
지방행정· 사회복지서 기보	24	2	2	11	2	2	1	1	1	1		1	2	11	2	1	2	2	2	2
지방행정· 사서서기보																				
지방행정· 공업서기보																				
지방행정· 농업서기보	3			1							1			2				1	1	
지방행정· 녹지서기보																				
지방행정· 보건서기보	1			1								1								
지방행정· 환경서기보																				
지방행정· 시설서기보	8	1	1	6			1	1	1	1	1		1	1			1			
지방전산· 방송통신서 기보																				
지방사회복 지·보건서 기보																				
지방사회복 지·시설서 기보																				
지방사서· 공업서기보																				
지방공업· 농업서기보																				
지방공업· 환경서기보																				
지방공업· 시설서기보																				
지방공업· 운전서기보																				
지방보건· 의료기술서 기보																				
지방행정· 전산·방송 통신서기보																				
지방행정·																				

공업·환경 서기보																				
지방행정·시설 공업·서기보																				
지방행정·시설 농업·서기보																				
지방행정·방재 농업·안전서기보																				
지방행정·시설 녹지·서기보																				
지방행정·의료 보건·기술서기보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 기술서기보																				
지방행정·전산·공업 ·방송통신서기보																				
연구직 계																				
지방학예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지방학예연구사·행정 주사보																				
지방기록연구사·행정 주사보																				
지도직 계																				
지도관 소계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농업 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 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시설 사무관																				
지도사 소계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행정 주사																				
지방농촌지도사·농업 주사																				

지방농촌지 도사·행정 주사보																			
지방농촌지 도사·농업 주사보																			
별정직 계																			
5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7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전문경력관 계																			
나군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로 배치하는 팀

기관별	부서명	팀수	배치하는 팀명	비고
합 계		229		
본 청	소 계	141		
실	기획감사실	5	기획, 예산, 의회법무규제, 청렴감사, 조사	
	미래전략실	4	정책개발, 지역발전, 성장전략, 미래산업	
	투자유치실	3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홍보미디어실	4	소통정책, 언론홍보, 뉴미디어, 정무지원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5	시정, 서무, 인사, 새마을자치, 교류협력	
	안전총괄과	5	안전정책, 자연재난대응, 상황관제, 민방위특사경, 중대재해예방	
	지역활력과	4	5도2촌, 왕도심활성화, 마을공동체, 농촌공간	
	스마트정보과	5	첨단항공정책, AI빅데이터, 스마트도시, 정보화, 통신	
	회계과	4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무과	5	세정, 시세, 징수, 세외수입, 과표	
	민원토지과	6	민원정책, 통합민원,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주소, 지적재조사	
경제문화국	경제과	4	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에너지지원, 일자리육성	
	문화예술과	4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시설운영, 문화시설조성	
	관광과	4	관광정책, 관광개발, 축제, 백제문화촌	
	문화유산과	6	문화유산정책, 고도육성, 문화유산보수, 백제왕도, 사적지관리, 석장리박물관	
	휴양공원과	4	휴양정책, 휴양운영, 공원녹지, 정원시설	
	환경보호과	4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환경시설	
	자원순환과	3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교육복지국	교육체육과	5	교육정책, 교육지원, 체육진흥,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관리	
	평생학습과	5	평생학습정책, 평생학습진흥, 웅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청소년	
	청년 인구정책과	3	인구정책, 청년정책, 고향사랑	
	복지정책과	5	복지정책, 행복키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장애인과	5	경로복지, 경로시설, 통합돌봄 , 장애인복지, 나래원	
	가족지원과	4	가족정책, 아동보호, 보육, 아동드림	
건설도시국	건설과	5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계획, 하천시설, 농촌기반	
	도시정책과	4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개발, 도시정비	

	허가건축과	6	건축행정, 주택관리, 건축1, 건축2, 농지산림, 개발행위	
	교통과	5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안전, 차량등록, 차량관리	
	도로과	5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 가로조명	
	산림자원과	5	산림정책, 산림보호, 임산소득, 밤연구, 알밤박람회	
	상하수도과	5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정수시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3	의정, 의사, 정책지원	
직속기관	소 계	3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농업정책, 농촌복지, 농업지원, 원예특작	
	농식품유통과	4	유통정책, 농축산유통, 먹거리지원, 생산관리	
	축산과	4	축산정책, 가축방역, 축산진흥, 동물보호	
	농촌진흥과	4	지도기획, 역량개발, 농촌자원, 귀농귀촌	
	기술보급과	4	식량작물, 환경농업, 소득작물, 농업기계	
보건소	보건정책과	4	보건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위생지도	
	건강관리과	4	건강증진, 모자보건, 진료민원, 방문보건	
	질병관리과	5	정신건강, 치매예방, 치매지원, 감염병대응, 감염병예방	
읍면동	소 계	52		
읍	유구읍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면	이인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탄천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계룡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반포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의당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정안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우성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사곡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신평면	4	총무, 찾아가는복지, 민원, 산업개발	
동	중학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웅진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금학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옥룡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신관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월송동	2	총무, 찾아가는복지	

도시계획시설(학교:공주대학교)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 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15필지 내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위치	당해 사업면적/ 사업면적 (㎡)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학교 : 공주대학교)	공주대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4,232.60/ 359,542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사업] -건축면적:1,887.90㎡ -연면적:5,511.87㎡	실시계획 인가일 ~ 2026.12.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공주대학교총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3. 준공 토지 및 건물의 조서

(1)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명세서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366,818	359,542			
1	공주시 신관동	43	도	6,376	162	공주시		
2	공주시 신관동	51	답	2,147	2,147	국(교육부)		
3	공주시 신관동	46-4	대	254	254	국(교육부)		
4	공주시 신관동	46-5	대	92	92	국(교육부)		
5	공주시 신관동	43-15	잡	8	8	국(교육부)		
6	공주시 신관동	43-16	잡	256	256	국(교육부)		
7	공주시 신관동	171-18	학	19	19	국(교육부)		
8	공주시 신관동	177-10	도	25	25	공주시		
9	공주시 신관동	182	학	354,253	353,229	국(교육부)		
10	공주시 신관동	242-1	임	233	233	국(교육부)		
11	공주시 신관동	545	구	736	736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공주시 신관동	545-9	학	134	134	국(교육부)		
13	공주시 신관동	546-2	학	59	59	국(교육부)		
14	공주시 신관동	166-4	도	71	33	국(교육부)		
15	공주시 신관동	52-3	답	2,155	2,155	국(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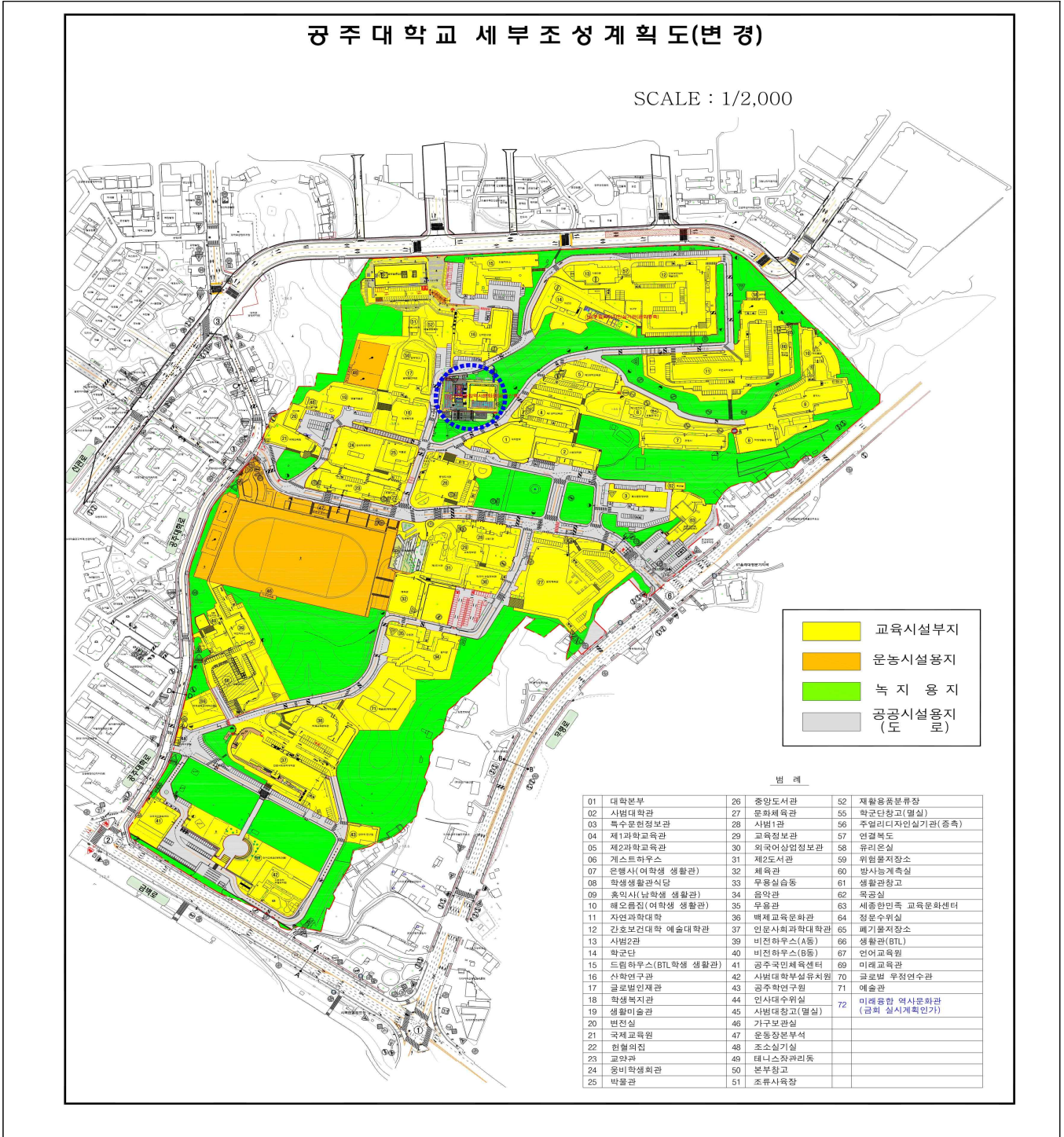
(2) 건물조서

- 미래융합 역사문화관(건물번호 72) : 신축

구분	내용	
사업명	공주대학교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2-3번지 일원	
대지면적	359,542m ² (캠퍼스전체)	금회 사업부지 : 4,232.60m ²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구분	캠퍼스전체	금회 사업(미래융합 역사문화관)
건축면적	64,102.15m ²	1,887.90m ²
지상층	238,940.30m ²	3,997.10m ²
지하층	23,298.50m ²	1,514.77m ²
합계	262,238.80m ²	5,511.87m ²
건폐율	17.83% (법정20%이하)	-
용적률	66.46% (법정80%이하)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

4. 참고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학교:공주대학교) 공용건축물 용도변경(게스트하우스) 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15필지 내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용건축물 용도변경 (게스트하우스)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위치	당해 사업면적/ 사업면적 (㎡)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 (학교 : 공주대학교)사업	도시계획 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지상1층 용도변경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A=359,542㎡, 금회 사업부지 면적 : 174.77㎡	게스트 하우스 지상층 용도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5.12.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공주대학교총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3. 준공 토지 및 건물의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16필지				366,818	359,542			
1	신관	43	도	6,376	162	공주시	-	
2	신관	51	답	2,147	2,147	국(교육부)	-	
3	신관	46-4	대	254	254	국(교육부)	-	
4	신관	46-5	대	92	92	국(교육부)	-	
5	신관	43-15	잡	8	8	국(교육부)	-	
6	신관	43-16	잡	256	256	국(교육부)	-	
7	신관	171-18	학	19	19	국(교육부)	-	
8	신관	177-10	도	25	25	공주시		
9	신관	182	학	354,253	353,229	국(교육부)	-	
10	신관	242-1	임	233	233	국(교육부)	-	
11	신관	545	구	736	736	국(농림축산식품부)	-	
12	신관	545-9	학	134	134	국(교육부)	-	
13	신관	546-2	학	59	59	국(교육부)	-	
14	신관	166-4	대	71	33	국(교육부)	-	
15	신관	52-3	답	2,155	2,155	국(교육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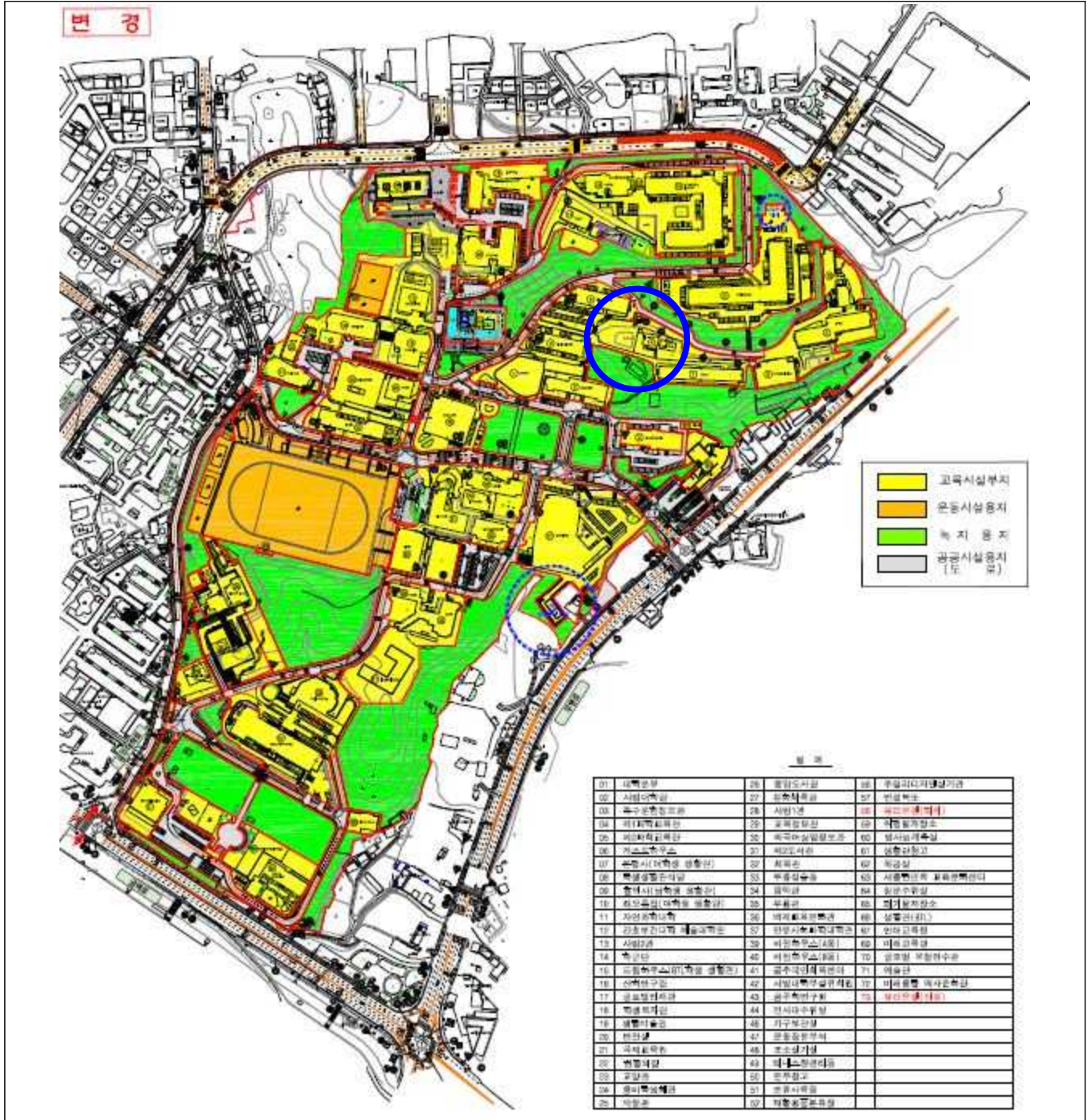
(2) 건물조서

◦ 건축 개요(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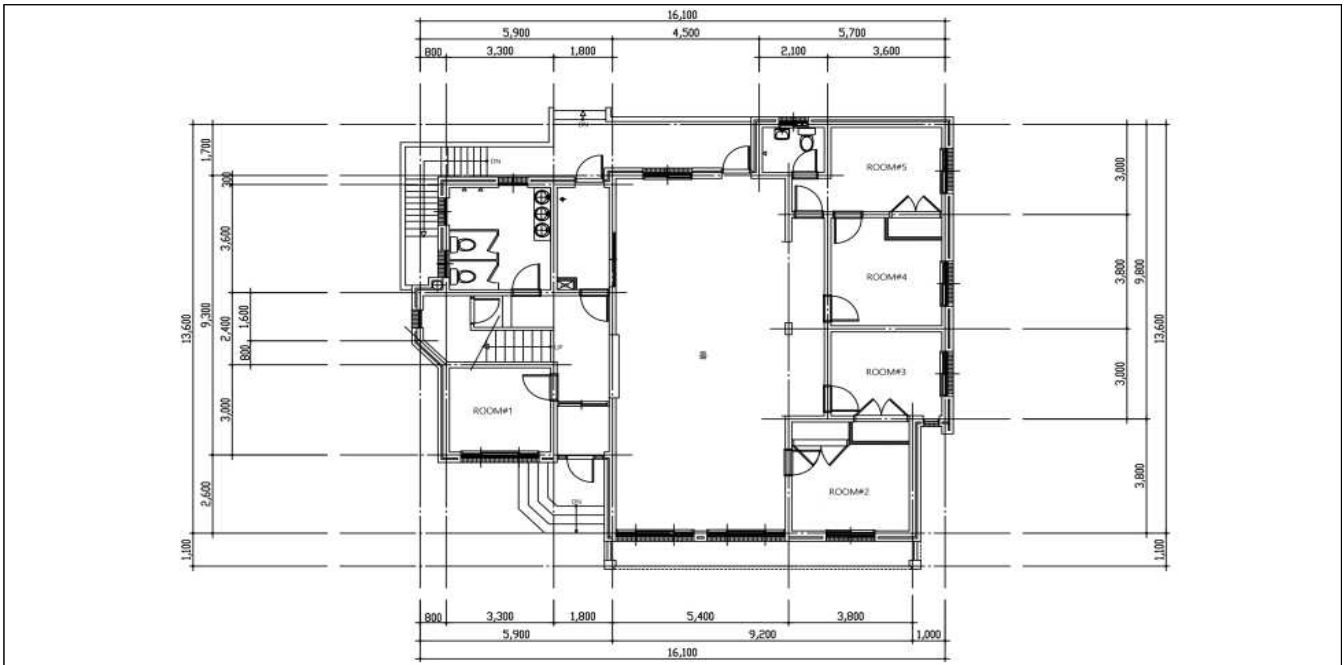
구분	층별	각층 바닥면적(㎡)		세 부 용 도		합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게스트 하우스	지하1층	18.36	18.36	생활관	생활관	18.36	변경없음
	지상1층	174.77	146.16	생활관	교육연구시설	174.77	용도변경
		-	28.61	-	휴게음식점		
	지상2층	93.18	93.18	생활관	생활관	93.18	변경없음
합 계		286.31					변경없음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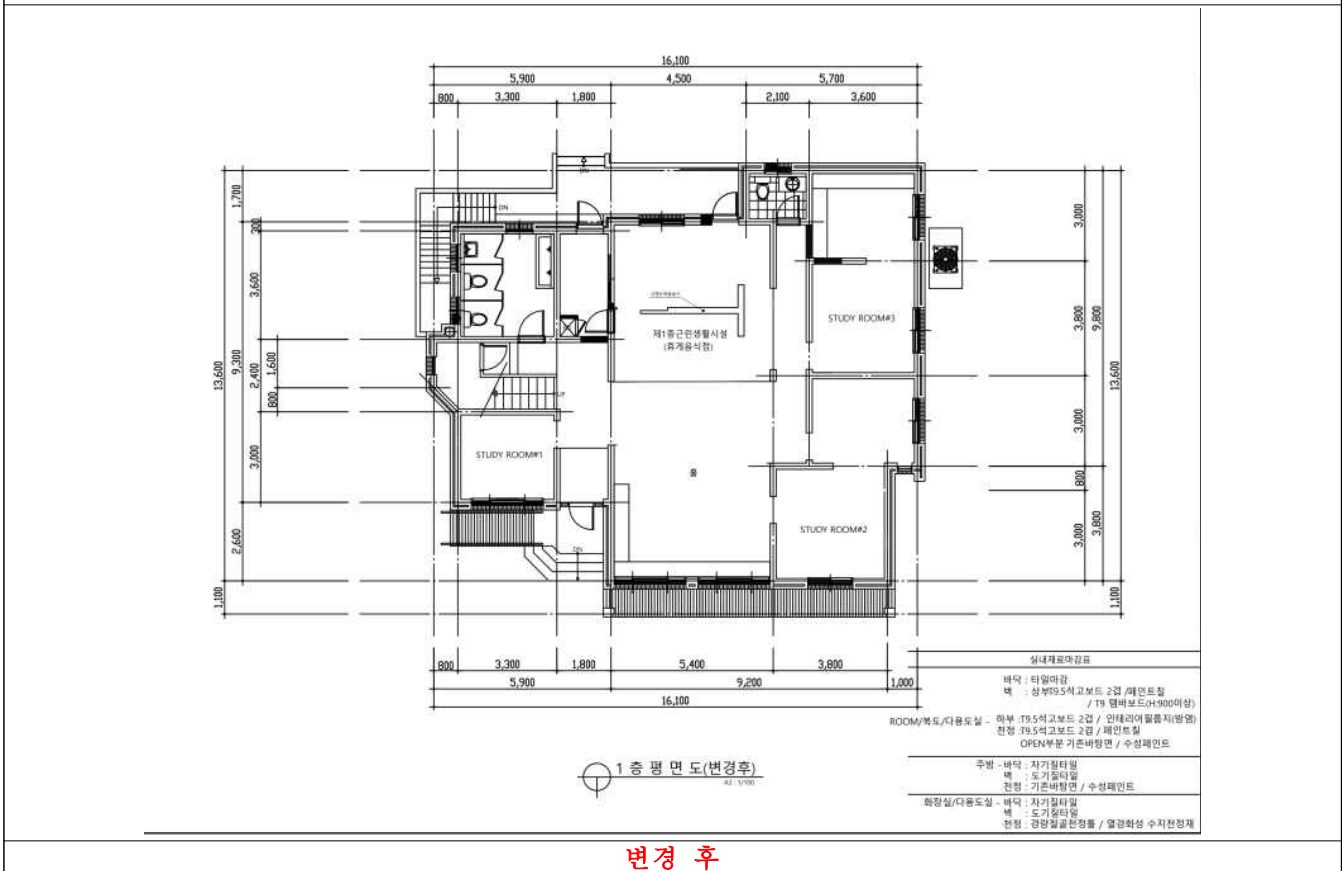
(1) 위치도



(2) 설계도서



변경 전



변경 후

공주시 공고 제2026-601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이미 규정되어 기존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의 실효성이 낮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신고·처리 기준 정비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전부개정하여 「공주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 지침」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 신고상담(제3조), 신고의 접수(제4조),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제7조(신고기록)

□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8조), 신고의 보완(제9조), 신고의 취소(제10조), 신고의 처리(제11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2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4조),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제15조), 위반행위의 기록·관리(제16조)

3. 행정예고 기간 : 2026. 2. 26.(목) ~ 2026. 3. 18.(수)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이메일 : kwonjy9108@korea.kr
- 전 화 : 041-840-2055 / FAX : 041-840-3705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041-840-205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정명 :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규정(안)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안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주시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 고 취 지 및 이 유			
법 위 반 행 위 내 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괄신고 </div> <div>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div> </div>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기록 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법원 통보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input type="checkbox"/> 종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리내역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 료 확 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보존기간	년 (20 . .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p> <p>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p>	
타 기관 신고 여부	<p>[] 타 기관 신고([] 소속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p> <p>[]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장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공고 제2026 - 602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공 주 시 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개소)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송산천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송선동 423-5	송선동 190-2	L=1.2km			소교량 2개소 등	2024.1. 2026.12.	하천 정비	

○ 변경사항 : 토지세목조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소하천 정비사업 명칭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나. 공사의 개요

- 사 업 량 : 하천정비 L=1.2km, 소교량 2개소 등
- 총사업비 : 4,767백만원
- 공사위치 : 공주시 송선동 196번지 ~ 642-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 행 자 : 충청남도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24년 1월 ~ 2026년 12월(36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 공주시청 건설과 하천계획팀 열람가능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 리 자 : 공주시장(건설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위치도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월별 공종별	비율 (%)	공사기간																비고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26 개월	28 개월	30 개월	32 개월		34 개월	36 개월
축제공	50.04																			
호안공	32.37																			
구조 물공	1.09																			
교량재 가설공	2.79																			
포장공	6.59																			
공통 부대공	7.12																			
누계	10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90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7,795	1,645	1,300	2,500	2,350	

12.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3년 2월 이후 ~
- 보상절차 및 방법 :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지급
- 보상가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13. 기타사항

- 위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건설과(☎041-840-7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끝.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필지				74,407	23,769						
1	송선동	427	천	532	55	국 (건설교통부)					
2	송선동	670	도	1,825	61	국 (국토교통부)					
3	송선동	426	답	403	125	국 (국토교통부)					
4	송선동	423-1	답	323	195	국 (국토교통부)					
5	송선동	423-5 (423)	답	6,678	57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6	송선동	423-6 (423)	답	6,678	53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7	송선동	423-7 (423)	답	6,678	282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8	송선동	424	답	571	519	국 (국토교통부)					
8	송선동	424-1	답	103	103	국 (국토교통부)					
10	송선동	423-2	답	112	70	국 (국토교통부)					
11	송선동	642-10	제	1,219	1,219	국 (건설부)					
12	송선동	642-9	답	102	102	국 (건설교통부)					
13	송선동	145	답	415	415	국 (건설교통부)					
14	송선동	145-1	답	864	104	국 (건설교통부)					
15	송선동	423-3	답	256	74	국 (건설교통부)					
16	송선동	423-4	답	333	211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7	송선동	642-1	천	2,808	1,970	국 (건설부)					
18	송선동	642-13	전	662	566	국 (건설교통부)					
19	송선동	642-11	제	1,176	809	국 (건설부)					
20	송선동	428-6	답	1,266	1,080	국 (건설교통부)					
21	송선동	428-4	답	74	74	국 (건설교통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송선동	428-3	답	374	337	국 (건설교통부)					
23	송선동	642-14	답	171	156	국 (건설교통부)					
24	송선동	642-159	답	29	5	국 (건설교통부)					
25	송선동	642-156	제	436	184	국 (건설부)					
26	송선동	642-137	천	1,109	1,047	국 (건설부)					
27	송선동	642-161	답	2	2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8	송선동	642-234 (642-16)	답	434	52	공주시					
29	송선동	642-153	제	712	549	국 (건설부)					
30	송선동	642-152	답	795	103	국 (건설교통부)					
31	송선동	642-231 (642-4)	답	879	4	공주시					
32	송선동	642-232 (642-5)	천	226	63	공주시					
33	송선동	642-154	답	1,030	1,030	국					
34	송선동	642-233 (642-6)	답	796	71	공***** **회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주	충청남도 공주시 방머리*길 *****(***)	대표자	
35	송선동	642-139	제	4,683	3,042	국 (건설부)					
36	송선동	191-1	답	2,021	2,021	공주시					
37	송선동	191-3 (191)	답	684	209	공주시					
38	송선동	190-6 (190-2)	천	1,960	1,954	공주시					
39	송선동	190-5	천	205	107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0	송선동	674-1	도	206	84	국 (건설부)					
41	송선동	198-1	답	1,974	28	국 (건설교통부)					
42	송선동	196-1	천	954	763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송선동	196-3	천	297	105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4	송선동	197	천	436	194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5	송선동	197-1	천	526	21	국 (건설교통부)					
46	송선동	642-160	제	48	48	국 (건설부)					
47	송선동	642-15	제	102	102	국 (건설부)					
48	송선동	138-3	천	158	158	윤*림	서울 성동구 신당동 ****-**				
49	송선동	138-2	답	168	168	공주시					
50	송선동	138-5 (138-4)	답	1,234	143	공주시					
51	송선동	138-1	천	242	242	윤*림	서울 성동구 신당동 ****-**				
52	송선동	642-235 (642-18)	답	417	90	공주시					
53	송선동	642-17	제	911	700	국 (국토교통부)					
54	송선동	130-6 (130)	대	660	1	공주시					
55	송선동	130-7 (130)	대	660	2	공주시					
56	송선동	130-8 (130-5)	전	625	28	공주시					
57	송선동	130-3	답	368	60	국 (국토교통부)					
58	송선동	130-4	답	476	43	국 (국토교통부)					
59	송선동	129-2	답	16	16	국 (기획재정부)					
60	송선동	129-3 (129)	전	5,381	487	공주시					
61	송선동	129-4 (129-1)	답	3,901	237	공주시					
62	송선동	192-2 (192)	답	2,116	18	공주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3	송선동	196-3 (196)	천	1,029	46	미등기1		김*근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수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64	송선동	196-2 (196)	천	1,029	700	미등기2		김*근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수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65	송선동	674	도	339	131	국(건설부)					
66	송선동	193-5 (193-1)	천	510	74	공주시					

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이용료 결정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룡 어울림 행복센터)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일

공 주 시 장

□ 계룡 어울림 행복센터 이용료

층별	구분	이용요금	비고
1층	건강증진실	1개월 20,000원	
		3개월 50,000원	
		6개월 100,000원	
2층	다목적실 (대관료)	1일 200,000원	계룡면 단체 50% 할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프린세스G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도 : 붙임2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3 참조

붙임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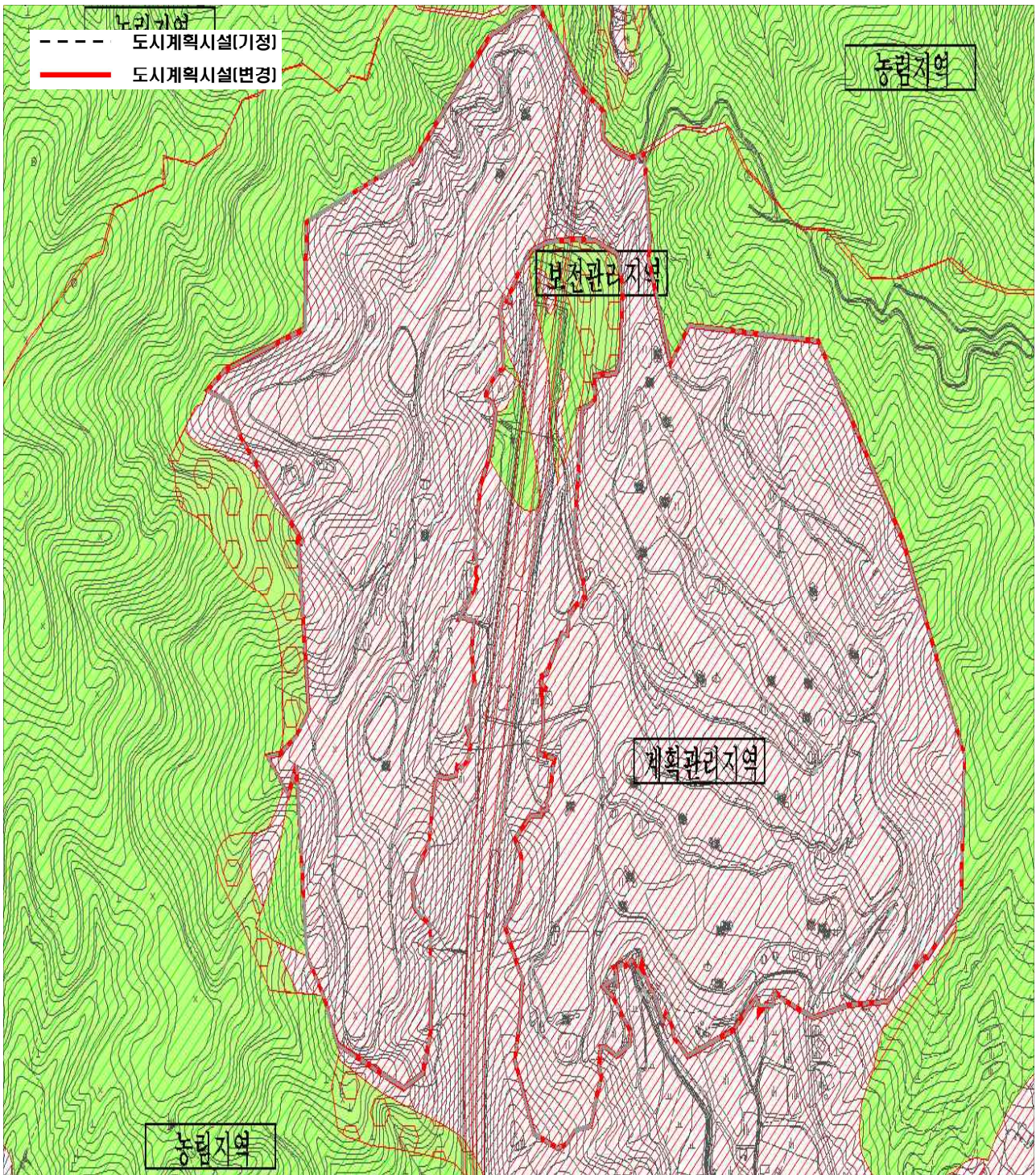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체육시설	골프장	정안면 인풍리 330-3번지 일원	751,706	-	751,706	공주시 고시 제2006-36호 (2006.3.15.)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 정정	◦ 면적산정의 착오 등 반영

붙임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도



붙임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따른 지형도면고지도

